

넥서스 브리프

NB-2026-016 · 감독·제도 · 발행 2026년 8월 16일 · 읽기 6분

공공기관 서류는 왜 API 가 아니라 스크래핑으로 남았나

전송요구의 상대방에 법원과 행정기관이 없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차단을 사고가 아니라 근거가 약했던 방식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본다.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에 전송 의무를 지웠고 공공기관에는 지우지 않았다. 그래서 스크래핑이 남았다. 다만 대체수단보다 차단 일정이 먼저 정해지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은 정책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생긴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협회·금융회사와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다.

항목	값	비고
점검회의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영향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상속인 조회	금융위원회 2026.8.12 자료
현재 방식	정보주체 동의 하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	증빙 제출을 대체
전송요구 대상 지정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6.25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추가 신청 2026.8.11~8.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차단 유예	8월 20일 → 8월 31일	뉴시스 2026.8.12 보도,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자료는 금융권이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활용한다고 적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가 열거돼 있다. 정보주체 동의 하에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이 증빙 제출을 대체한다. 정책 주택금융 지원기관 등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스크래핑이 제한되면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단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수단 마련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본인전송요구권 안내 자료를 냈다.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권리다. 수요가 높은 8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금융권 스크래핑을 제한하려던 일정을 8월 31일까지 유예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스크래핑은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금융회사나 대행 사업자에게 건네는 데서 시작한다. 그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다른 기관 시스템에 접속하고, 화면에 뜬 내용을 읽어 온다. 이용자는 동의 한 번으로 끝내지만, 자기 인증정보를 제 3 자에게 넘긴다.

신용정보법이 마이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설계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제 22 조의 9 제 3 항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대통령령의 기준에 어긋나는 방식을 막는 조문이다. 같은 조 제 4 항은 정보를 가진 쪽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정한다. 인증정보를 넘기는 대신 기관끼리 정해진 규격으로 주고받는다.

그런데 공공기관 서류에는 스크래핑이 남았다.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는 전송을 요구받는 상대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 정한다. 법원과 행정기관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API 를 열 의무도,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었다. 금융회사는 서류를 받아야 대출 심사를 마칠 수 있고, 이용자는 동의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끝난다. 세 당사자 가운데 누구도 방식을 바꿀 유인이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의 2 가 2023 년 3 월 14 일 신설되면서 전송요구의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넓어졌다. 다만 의무를 지는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2026 년 8 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그 범위에 들어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 개 기관의 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 년 2 월 26 일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70 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 인원은 128.5 만명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는 전자서명법의 인증서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그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정한다. 제 6 조 제 3 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한다. 이용자가 서류 제출을 맡기려고 인증정보를 건네는 행위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소는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순서다. 대체수단이 갖춰진 뒤 차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일정이 먼저 정해진 뒤 대체수단을 논의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는 사람, 상속인 조회를 하려는 사람이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정책 주택금융 지원기관 등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청인 자격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부담은 수수료보다 시간과 절차로 나타난다. 앱에서 동의 한 번으로 끝나던 단계가, 발급 기관에 접속해 서류를 내려받고 다시 올리는 단계로 바뀐다. 전세 계약처럼 잔금일이 정해진 거래에서는 이 며칠이 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정책 주택금융은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어 확인해야 할 서류가 더 있다.

차단 일정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용자가 그 일정을 알게 되는 시점은 신청 화면의 제출 항목이 늘어난 다음이다. 지금까지 이 절차는 동의 한 번으로 끝났고, 그 뒤에서 어떤 방식이 쓰였는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예 기간에 스크래핑을 활용하는 금융서비스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어떤 서비스가 이 방식에 의존하는지는 그 공개 전까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없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대리인 사전협의는 신청한 사업자와 개별 공공기관 사이에서 진행된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서비스가 유예 종료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안내도 없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 고용 24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37종 서류의 제출 부담을 없앴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범위는 이렇게 서비스별로 정해지고, 금융권이 받아 오던 서류 전부를 포괄하지 않는다.
- 신용정보법 제 33조의 2의 전송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다. 공공기관의 전송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기준 밖 기관에는 지금도 API를 열 의무가 없다.
- 유예는 8월 31일까지다. 준비기간을 얼마로 두는지, 단계적 시행의 단계를 무엇으로 나누는지는 8월 12일 회의 자료에 적히지 않았다. 유예를 다시 연장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 앱의 서류 제출 화면을 연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자동 제출 항목인지 직접 제출 항목인지 확인한다.
- 전세자금대출처럼 기한이 있는 거래는 계약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발급 기관과 발급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 정부 24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명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제출 항목이 늘어나도 신청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회사

- 스크래핑으로 받던 항목과 대체수단이 정해진 항목을 구분해 신청 화면에 표시하고, 직접 제출로 바뀌는 서류는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알린다.

당국

- 전송요구 대상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금융권이 실제로 받아 오던 서류 목록과 대조해 빠진 항목을 확인한다. 대체수단이 갖춰지는 시점과 차단 시점의 간격을 문서로 정한다.

갈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유예가 끝난 뒤 스크래핑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고 밝혔고, 개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를 이어간다고 적었다.

A로 가면 · 사전협의를 마친 사업자에게 기존 방식을 한시 유지하도록 하면, 이용자는 종전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을 마친다. 협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서비스에서는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난다.

B로 가면 · 기한을 정해 API 전환을 요구하면, 지정된 8개 기관 밖의 서류를 쓰는 서비스부터 직접 제출로 바뀐다. 대출 신청 절차가 서류 발급 기간만큼 길어진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협의 결과에 기관별 전송 항목이 적히는지 본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할 현황에 금융서비스가 몇 건 오르는지도 함께 본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본인확인과 인증
금융상품	보급자리론

란	편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어린이·주니어 적금
금융사건	직원 313 명이 고객 비밀번호 4 만 건을 바꿨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금융위원회가 2026.8.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협회·금융회사·유관기관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2026.8.12 발표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08
금융권이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서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스크래핑을 활용하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상속인 조회 등에서 정보주체 동의 하에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으로 증빙 제출을 대체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08
"정책 주택금융 지원기관 등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청인 자격 확인",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이용에도 어려움이 발생"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08
참석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단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체수단 마련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는 점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3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6.25 8 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안내하며 수요가 높은 8 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	1 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6.25 발표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이 2026.8.11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시범운영 3 차 추가 신청을 8.11~8.31 접수하며, "스크래핑의 일률적 금지가 아닌" 방향을 밝힌 점	1 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8.11 발표 원문 전제.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61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의 기준에 어긋나게 할 수 없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대통령령의 방식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1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 조의 9 제 3 항·제 4 항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719&cseq=2045606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 전송을 요구받는 상대방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며, 전송 대상자는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다	1 차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조문 원문 확인. 전송 의무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 한정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3719&cseq=2045627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의 2 — 2023.3.14 신설. 전송 의무를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와 전송 대상 정보, 방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	1 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조의 2 조문 원문 확인. 조문 말미 "This Article Newly Inserted on Mar. 14, 2023"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2389&cseq=2225505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 — 접근매체에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해당 수단의 비밀번호가 포함된다	1 차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12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그 알선·광고를 금지	1 차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조문 원문 확인. 이용자가 서류 제출 대행을 위해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5549&cseq=2310618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참여 70 개사(마이데이터 13 개사·금융회사 57 개사), 사전등록 128.5 만명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6.2.26 발표 원문 전재. 2.26. 기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305
고용노동부가 2025.12.4 고용 24 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37 종 서류의 제출 부담을 없앤다고 발표	1 차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2025.12.4 발표 원문 전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335
법원행정처가 8 월 20 일부터 예정했던 가족관계증명서의 금융권 스크래핑 제한을 8 월 31 일까지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스크래핑 활용 금융서비스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힌 점	2 차	뉴시스 2026.8.12 보도. 본문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2_00037468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정보의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되고 API 등 전송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	2 차	이데일리 2026.8.12 보도. 시행령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조문 번호를 쓰지 않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753126645546664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28 자	15 건	13 건 (87%)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유예 종료 후 대리인 사전협의를 마친 기관과 전송 항목이 공개됐는가. 전송요구 대상 공공기관이 8 곳에서 늘었는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정책 주택금융 신청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동 제출 항목으로 남았는가, 직접 제출 항목으로 바뀌었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